



의안번호	제 2022 - 11호
보 고 연 월 일	2022. 5. 2. (제116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제 출 자	운영지원단장
-------	--------



목 차

I.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1
II. 아동학대범죄 수정 양형기준 관보 게재 보고	2
1. 개요	2
2. 추진 경과	2
III.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견수렴 계획 보고	3
1. 개요	3
2. 관련 규정	3
3. 의견수렴 계획	5
4. 시행 일정	8
IV.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9
1.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	9
2.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의견 보고	9
3. 서면 질의 등 민원 및 회신	12

I.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 운영지원단은 전문위원 전체회의의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였음
- 전문위원 전체회의 개최 현황

회의명		일 시	안 건
전문위원 전체 회의	제146차	2022. 4. 18. 15:30	○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심의(설정 범위, 유형 분류, 권고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및 수정안 검토

II. 아동학대범죄 수정 양형기준 관보 게재 보고

1. 개요

- 양형위원회는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및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보에 양형기준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양형위원회 제115차 회의에서 의결된 『아동학대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관보 게재를 통하여 공개하였음

2. 추진 경과

- 2022. 3. 28. 양형위원회 제115차 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
- 2022. 4. 1. 행정안전부의 관보등록시스템에 접속 / 등록 요청
- 2022. 4. 11. 양형기준 관보 게재
(<http://gwanbo.go.kr>)

III.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견수렴 계획 보고

1. 개요

- 위원회는 양형기준의 설정 절차를 객관화·투명화 하는 동시에 양형 기준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2. 관련 규정

- 양형위원회 규칙

- ▶ 제11조(의견수렴)

위원회는 각급 법원과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할 수 있고,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 ▶ 제17조(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 수렴)

① 위원회는 제16조 제1항의 양형기준 초안 또는 양형기준안에 대하여 법원과 관계 국가기관·공공기관·연구기관·단체·전문가 또는 자문위원 등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담당자, 전문가 등과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 준수를 위한 절차

- ▶ 법원조직법 제81조의12(위임규정)

②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양형기준안의 공개)

위원회는 제16조(양형기준의 설정) 제1항 제2호(양형기준안 작성)의 양형기준안 및 설명서를 양형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자료실을 발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① 행정청은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하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거나 예측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등 긴급한 사유로 예고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정책등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정책등의 예고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상당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는 입법예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3. 의견수렴 계획

가. 대상 기준안

- 제116차 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된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나. 대상기관 선정(안)

-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대상기관 선정(안)

연번	구분	기관	비고
1	입 법 부	국 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2	사 법 부	대 법 원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
3	행 정 부	경 찰 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4		국 가 인 권 위 원 회	행정법무담당관
5		국 민 권 익 위 원 회	법무감사담당관
6		법 무 부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교정본부장
7		법 제 처	운영지원과장
8		보 건 복 지 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9		행 정 안 전 부	법무담당관
10		여 성 가 족 부	법무감사담당관
11		국 방 부	법무관리관
12		헌 법 재 판 소	행정관리국장
13		연 구 기 관	대 한 범 죄 학 회

연번	구분	기관	비고	
14		한 국 교 정 학 회	사무국장	
15		한 국 법 학 교 수 회	사무총장	
16		한 국 법 학 원	총무이사	
17		한 국 비 교 형 사 법 학 회	총무간사	
18		한 국 형 사 법 학 회	총무간사	
19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20		한 국 형 사 정 책 학 회	총무간사	
21		한 국 피 해 자 학 회	총무간사	
22		한 국 형 사 소 송 법 학 회	총무간사	
23		한 국 형 사 판 례 연 구 회	총무간사	
24		한 국 여 성 학 회	총무간사	
25		한 국 젠 더 법 학 회	총무위원장	
26		한 국 여 성 정 책 연 구 원	기획조정본부장	
27		유 관 기 관	대 한 법 무 사 협 회	사무총장
28			대 한 법 률 구 조 공 단	사무총장
29			한 국 범 죄 방 지 재 단	사무총장
30	대 한 변 호 사 협 회		사무총장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3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32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33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총장	

연번	구분	기관	비고
34		한 국 여 성 변 호 사 회	사무총장
35		시 민 과 함 께 하 는 변 호 사 들	사무총장
36		한 국 여 성 인 권 진 흥 원	여성폭력방지본부 성폭력방지팀장
37	시 민 단 체	경 제 정 의 실 천 시 민 연 합	사무국장
38		아 동 권 리 보 장 원	정책연구팀장
39		참 여 연 대	사범감시센터, 청년참여연대
40		한 국 가 정 법 률 상 담 소	총무부장
41		한 국 Y M C A 전 국 연 맹	사무총장
42		한 국 Y W C A 연 합 회	사무총장
43		다 시 함 께 상 담 센 터	소장
44		한 국 사 이 버 성 폭 력 대 응 센 터	소장
45		성 매 매 문 제 해 결 을 위 한 전 국 연 대	사무국장
46		한 국 여 성 단 체 연 합	사무총장
47		한 국 성 폭 력 상 담 소	소장
48		한 국 여 성 의 전 화	사무처장
49		한 국 여 성 민 우 회	사무처장
50		전 국 성 폭 력 상 담 소 협 의 회	사무처장
51		한 국 여 성 단 체 협 의 회	사무총장
52		탁 틈 내 일	사무국장
53		십 대 여 성 인 권 센 터	사무국장

4. 시행 일정

○ 의견조회 기간 : 2022. 5. 6. ~ 6. 7.

○ 의견조회 취합 : 2022. 6. 7.

※ 의견수렴 결과는 차회 양형위원회 회의 시 보고 예정

IV.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1.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

<여성폭력 사건의 양형 시 감경요소 채택 관련 민원사항 송부>

가. 주요 내용

- 여성단체에 대한 ‘기부’를 여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반성’으로 인정하고, 양형기준의 감경요소로 반영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개선 촉구
- 양형기준 정비 및 사법부의 인식 제고를 촉구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기여하는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개선 방안 촉구

나. 첨부

- 시민 참여 서명(총 6,001건)
- 관련 기사 (총 34건)
- 서명 참여자 한마디 (총 1,067건)

※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 「여성폭력 사건의 양형 시 감경요소 채택 관련 민원사항 송부」는 별첨 기재와 같음
(안건집에는 참여 시민 서명 총 6,001건은 첨부를 생략함)

2.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의견 보고

가. 개요

- 양형위원회의 활동 및 양형에 관한 정책 건의, 제안 등을 듣고자 하는 국민 참여 공간인 ‘양형위원회에 바란다’(http://sc.scourt.go.kr)에 접수된 의견 보고

나. 회신 완료 접수의견(2022. 4. 13. 까지 총 406건): 동일 요지 의견에 대해서는 동일한 취지로 회신함

연번	접수일자(접수건수)	의견요지
1	2022. 1. 31.(1)	○감경요소로서 진지한 반성과 자백, 공탁에 대한 의견
2	2022. 2. 14. ~ 2022. 3. 25.(3)	○개별사건 처벌과 관련한 반복민원
3	2022. 2. 14.(1)	○공범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
4	2022. 2. 15. ~ 2022. 3. 30.(378)	○동물보호법위반 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처벌 강화
5	2022. 3. 10. ~ 2022. 3. 14.(9)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건의
6	2022. 2. 28. ~ 2022. 3. 12.(3)	○특정사건 선고형에 관한 의견
7	2022. 3. 22. ~ 2022. 3. 23.(11)	○특정사건에 대한 처벌 강화 요청

○ 1번, 3번, 4번, 5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2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반복민원으로 별도의 회신 없이 공람 종결하였습니다.

○ 6번, 7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먼저,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그 외 특정사건에 관한 귀하의 의견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번 의견에 한하여) 다만,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취지에 대해서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다. 회신 미완료 접수 의견(2022. 4. 13.까지 접수된 의견 중 미회신 의견, 총 1182건)으로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할 예정입니다.

연번	접수일자(접수건수)	의견요지
1	2022. 3. 30. ~ 2022. 4. 13.(1182)	○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처벌 강화

3. 서면 질의 등 민원 및 회신

가. '국민신문고 게시판'

○ 회신 완료 접수의견(2022. 4. 13.까지 총 1건)

연번	접수일자(접수건수)	질의요지
1	2022. 3. 20.(1)	○ 여성단체에 대한 기부를 가해자의 '반성'으로 보아 양형 시 감경요소로 반영하는 것에 대한 개선 요청

○ 1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먼저,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의견에 대해서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나. 민원 우편

○ 회신 완료 접수의견(2022. 4. 13.까지 총 6건): 동일 요지 의견에 대해서는 동일한 취지로 회신함

연번	접수일자(접수건수)	질의요지
1	2022. 1. 28.(1)	○ 개별사건 판결에 대한 질의

2	2022. 1. 28.(1)	○ 공갈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송부
3	2022. 2. 7.(1)	○ 폭력범죄, 교통범죄, 손괴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송부
4	2022. 3. 10. ~2022. 3. 15.(2)	○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요청
5	2022. 4. 4. (1)	○ 성범죄, 감금범죄,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송부

○ 1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 기관으로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2번, 3번, 5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는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에 따라 관보 게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양형기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 양형기준」 책자는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및 관계기관(교도소 등 포함) 등에 배포하였으므로 그곳에서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며,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http://sc.scourt.go.kr>) 양형기준 코너에도 게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4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미완료 접수의견(2022. 4. 13.까지 총 1건)으로 빠른 시일에 회신할 예정입니다.

순번	접수일자(접수건수)	질의요지
1	2022. 4. 13.(1)	○ 개별 법률에 대한 질의